

第57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運營委員會 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 2月 24日(土) 午前 11時 28分

場 所 運營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議員의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議員의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丁昌熙議員 外 4人 發議) 1 面

(11時 28分 開議)

○委員長 羅在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 위원 9명 중 출석 위원 9명 전원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시간 이렇게 나오셔서 더욱이 오늘이 토요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 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案係長 洪柱喆 보고 드리겠습니다. 議案係長 洪柱喆입니다. 제5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2월 16일 丁昌熙議員 外 4人으로부터 발의되어 96년 2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丁昌熙議員 外 4人 發議)

(11時 30分)

○委員長 羅在岩 洪柱喆 議案係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丁昌熙議員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昌熙議員 丁昌熙議員입니다. 존경하는 羅在岩 委員長 그리고 安哲柱 幹事님 동료 위원 여러분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57회 임시회 안건 중 본인이 처음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내무부 자치 13130-132 '96년 2월 15일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의원의 의정활동 기간 중 지급하는 회의수당 중 공휴일이 회의 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국내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의 실비 지급을 확대하고 식비 지급 단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숙박비는 일인당 의장, 부의장은 2만 700원에서 3만 7,500원으로 식비는 1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의원은 숙박비 1만 6,2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식비는 1일이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구의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 함이니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3
----------	-----

제안년월일 : 1996. 2.
제안자 : 정창희의원
외 4인

1. 제안이유

-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회의(위원회 포함)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대통령령 제 14,877호(1995. 12. 30)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수정·보완하려는 것이며
- 대통령령 제14,857호(1995. 12. 29)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의 실비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3조제2항에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신설

- 제5항제2항의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함. (별표 1)

3. 참고 자료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 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37,500	25,000
의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18,000	18,000

부 칙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3 조(회의수당)		제 3 조(회의수당)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u>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현 행】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의장 ·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의 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16,200	10,500

【개정(안)】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의장 ·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37,500	25,000
의 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18,000	18,000

○委員長 羅在岩 丁昌熙議員 수고하셨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96년 2월 16일 丁昌熙議員 外 4인의 議員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 수당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제3조2항을 개정하고 여비는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인상하는 별표 규정을 개정하며 부칙에서 시행 기간을 '96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상위 법규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입니다.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 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것이 현행 규정인데 이 이하 문구가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 수당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상위 법규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입니다. 1항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 별표6항을 보시면 마지막에 비고 1, 2, 3이 있습니다. 거기서 3항에 보면 국내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표의 여비 지급 범위를 지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 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상한선 범위 내에서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비가 金以煥委員님이 상하차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회뿐만 아니고 국회라든지 기타 일반 공무원들 장 차관 또 급수별로 그 직급에 상응하는 예우 차원에서 금액 측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도 구청장과 같은 레벨을 유지한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개정 본문은 상위법 개정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은 개정안 시행 시기를 '9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소급 적용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법률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기득권 존중 측면에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 규정이 권리의 제한이 아닌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에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소급 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2월 15일자 내무부에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 수당을 소급하게 되면 소급분만큼 국민에게 재정 부담이 수반되어서 불이익이 가중됨으로 소급 입법은 위법이라고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마는 우리구 입장으로 봐서는 소급 시행하여야 할 실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실익이 없음을 염두에 두시고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그 이론에 대해서 기술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종전과 같이 제5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昌熙議員 답변식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朴文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培委員 朴文培委員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실화를 위해서 丁昌熙議員이 가장 획기적인 조례를 상정한 데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숙박료 이것이 호텔과 여관과 여인숙의 비용이 각각 실제 다르게 현실화된 금액으로 올린 것인지 우선 현재 받고 있는 요금표를 알고 계신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丁昌熙議員 숙박료라는 것이 물론 지방과 서울간에 그 지역에 따라서도 차등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등급 무궁화 하나서부터 4개 5개 있습니다마는 그 무궁화 마크 표시에 따라서도 가격에 차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원들은 국장급에 속하는 숙박시설과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무부 지침이 되어 있고 또 의장이나 부의장은 청장이나 부청장에 상응하는 그런 숙박비로 내무부에 못 박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상한선으로는 일단 의원이나 의장 부의장은 이 금액을 초과해서는 정할 수 없는 상위법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물론 훌륭하게 우리들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숙박을 이용하면서 의정할 수 있는 또 출장을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최소한도의 환경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무부의 보장이 당연히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현행법상에 제약이 이렇게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朴文培委員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文培委員 그 뜻은 기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실제로 받고 있는 특급 호텔 B급호텔 또 여관비 또 일반 여인숙비 차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실료라고 할까 일반 여인숙 같은 데를 잠시 빌려서 낮에 이용하는데도 받은 금액이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저녁 자는데 얼마나 하는데 2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러면 현실화에 맞는 요금 인상이 책정이 되어야지 소위 상위법이 묶여 있어서 그 이상은 못 올린다 그러면 올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위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상위법도 고쳐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뭐 동네 사람이 저 문민이 지게꾼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상위법이니까 묶여서 못한다. 이러한 발상 자체가 검토보고 되어서 옳다고 하고 제약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회의를 느낍니다. 의원이 괜히 되었다는 이런 시점에서 다 같이 의원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부터도 시정해서 실제로 얼마씩 받고 있는데 실제 중간 레벨의 여관비 정도는 주고서 부러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뭐 돈을 타기 위한, 돈을 인상하기 위해서 비겁한 방법으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 물가정책에 맞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고 정당당당히 또 위에 잘못된 상위법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건의와 함께 이 안건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일거양득의 우리 위원회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우리 朴文培委員 현실화에 접근한 금액이 되었으면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답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丁昌熙議員 해주시겠습니까?

○丁昌熙議員 지금 朴文培委員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으로 해서 숙박비를 종전에 비해서 1만 6,800원이 인상된 3만 7,500원의 수준이라고 하면 시골에 조그마한 호텔에 최소한도 하루 이용료가 하루에 6만 5,000원정도가 이 레벨의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모텔이나 여관을 이용할 경우에 한 2만 5,000원 정도의 하루 숙박비를 기준한다고치면 다소 남는 금액이고 호텔을 기준으로 할 적에는 절반 정도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또 식비를 2만 5,000원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식당이 평균으로 잡아서 5,000원 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식점의 설렁탕 가격이 4,500원에서 5,000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좀 식사를 괜찮게 한다고 하면 1만 5,000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1만에서 1만 5,000원 가기 때문에 의장이나 부의장이라 하더라도 편안하게 어느 정도 안락한 출장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숙박비는 종전에 비해서 불과 1,800원이 인상된 1일 숙박비가 1만 9,500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으로는 일반 여관에 숙박을 한다 하더라도 다소 500원을 보태던가 4,500원을 보태야만 이 숙박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식비 역시도 종전 1만 500원에서 7,500원이 인상된 1만 8,000원이라 하더라도 3식이 평균 하루 한끼니가 6,000원에 불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朴文培委員님과 의견을 저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이 금액이 전국적인 전체 군의원이나 구의원의 숫자가 워낙 많고 또 각 도에서 회의장으로 와서 회의를 하는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국가 재정상에도 다소 조금 더 지방자치에 대한 재정력이 확충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원래 이 본 안도 한 3년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수령되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3년이 지난 오늘날 일부 현실화를 다소 해서 변경된 안건으로 아마 2, 3년 후에 재정 확충이 되면 좀더 현실화가 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朴文培委員 되셨습니까?

○朴文培委員 글썽 1만 8,000원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상한선이 있습니까?

○丁昌熙議員 네. 그렇습니다.

○朴文培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委員長 羅在岩 예. 金以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以煥委員 金以煥委員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여비에 대해서 의장과 우리 평의원에 대해서 차등 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의 제안자이신 우리 丁昌熙議員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전국적인 입장까지 언급하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전

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국회에도 이런 차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가 그런 차등이 있다면 국회도 잘못이죠. 그러면 잘못된 것을 빨리 알면서 비록 우리가 구의원이지만 그런 것을 국회에서 이런다니까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더 더욱 더 말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보면 약 2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과 평의원들과의 차이가 20%정도 식대와 숙박비가,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는 100%가 넘어버렸어요. 배 차이가 넘고 식대는 거의 10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朴文培委員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족하다 많니 적니 현 시가와 맞다 안 맞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거기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동료 의원으로서 먹고 자고 하는데 의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100% 이상 차등을 둔다는 것은 의원들의 사기를 약화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3년동안 출장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탈 일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우리 의원들의 사기를 약화시키고 정말 의원들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전국적으로 어디나 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종로구만이라도 그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을 빼 버리고 의장만 한다면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의원들은 얼마 받고 의장은 얼마 받는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너무나도 바닥에 떨어진다는 그런 점에서 또 자존심이 상한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이것을 작년과 같이 20%선에서 이것을 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丁昌熙議員 金以煥委員님 말씀도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 20여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 상향 조정된 반면에 숙박비일 경우는 100%라는 상향 조정에 대해서 의아스럽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우리 손으로 선출

해서 뽑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출장을 갈 적에 한 분의 의원이 출장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 두분 내지 세분 정도 단체로 출장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반면에 의장이나 부의장은 우리 종로구의회를 대표해서 한분 정도나 이렇게 대표성을 지닌 분이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어서 참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두분이나 세분이 가게 되면 방도 두분이나 세분이 같이 주무시기 때문에 자연히 숙박비가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라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대표성을 지니고 절대적으로 숙박비가 우리하고 비슷한 상태로 조정했다가는 굉장히 부족한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또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차피 기왕에 잘못된 관행이라면 고쳐야 된다는 金以煥委員長 말씀도 매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라는 그래도 우리가 뽑은 의장이나 부의장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어느 정도는 품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예우를 우리 스스로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갖고 예우를 해서 모시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서로 가질 아름다운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은 합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以煥委員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출장을 가셨을 때 타 의장들은 좋은 방에서 자고 우리 종로구의장만 나쁜 방에서 자면 우리 종로구가 어떻게 잘못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더 빛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의장한테 협조한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의장만 있다면 충분히 고려될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어렵게 의원이 됐습니다. 위상을 떨어뜨리는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떠한 것도 우리가 쓰고 안쓰고를 떠나서 양보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이와 같이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차등이 배 이상 있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나

자신이 나를 깎는다 이런 의도에서 우리 丁昌熙議員님 말씀도 충분한 일리가 있고 이해는 갑니다라는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우리 의원들은 자신들의 자긍심이나 우리 안의 위상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 문제는 이와 같이 차등을 둔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뽑은 의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뽑았으면 조금 더 올리면 되죠. 우리가 뽑았으면 우리 대표니까 조금 더 올려 주시면 우리가 예우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생각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토론 시간에 또 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 金以煥委員長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朴文培委員 질의하시겠습니까?

○朴文培委員 우리 위원님들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라는 金以煥委員 발언에 동조하는 발언을 찬성하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인간의 기본이라고 하면 먹고 자는 의식입니다. 의식이 다 같아야 소위 상하가 없는 것입니다. 소위 계층간의 갈등 사람간의 갈등 이것이 파벌을 조성하고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러한 제도 밑에서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고 자존심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행은 그렇다 하지만 우리 종로구의회만은 정치일번지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이러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앞날의 의장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충청에서 의원들은 똑같이 상하없이 먹고 자는 이 경비만은 반드시 통일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통일한 예산안을 본 위원은 원합니다. 여기에 의결을 가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安哲柱委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哲柱委員 安哲柱委員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의 핵심사항 중 제3조 제2항의 단서조항 신설에 대한 것은 우리 지방의회에서 공휴일에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회의수당은 지급해야 된다고 보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별표 1에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보면 저희들 議員들의 등급이 지금 금액에서 보면 소위, 중위, 대위급에 해당되는 5급, 4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숙박비와 식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議長, 副議長은 2급, 3급에 준하는 사항인데 그런데 여기에 개정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지방의회의 회의출석식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방의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불합리한 점이었고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고치려 했었는데 사실 종로구의회에서 봤을 때 議員들이 출장을 더 많이 가게 되면 이제까지는 없었지만 가게 된다면 더 많이 가게되는 것들이고 의장이 출장을 가게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식비야 한끼에 6천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먹을 수 있겠지만 숙박비 중에서 1만 8,000원은 지방에 갔을 때 여인숙에 투숙할 수 있는 비용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숙박비나 식비나 현지 교통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금액을 상향 조정했었는데 이미 현실화도 되지 않을 바에야 이것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미 상위법에서 이 법에 대한 것을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개정된 1만 8,000원을 지급하나 개정되지 않은 1만 6,200원을 지급하나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 전체의 취지에 맞지 않게끔 결과적으로 여기에 주요골자에 보면 지금 議員들과 議長, 副議長의 차등화를 두겠다는 그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의회 議長이나 副議長님이 여기에 조항에 의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항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1만 8,000원

가지고 현실화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발의자께서 굳이 이것을 현실화 금액이라고 왜 굳이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昌熙議員 安哲柱委員님! 수준 높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잠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議長, 副議長이 인상된 숙박비나 식비라 하더라도 현실화하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답변을 아까 朴文培委員님이 질의했을 때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차피 현실화에는 크게 못미치는 금액입니다마는 지금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자치법이 12월 30일자로 부분적으로 개정돼서 지방자치에 대한 開展의 의지를 3년만에 처음 이렇게 일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 이것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삼년 후에 다시 우리 지방재정이 좀 확충이 되고 안정이 되면 현실화된 그러한 것이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잘 아다시피 종전에 하루에 3끼 식사를 1만 5,000원이라고 한다고 치면 3,500원짜리에 해당되는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이러한 최소한의 식사밖에는 제공받지 못했던 사항에서 이제는 갈비탕이나 설렁탕이나 내장탕을 먹을 정도의 그런 식비 정도가 이제 된다는 사항입니다. 또 먼저번에는 議長이나 副議長이나 여인숙에서 잘 수밖에 없는 숙박비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여관에서 그래도 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 議員들도 여인숙에서 잘 수밖에 없는 돈이 나오니 議長, 副議長도 여인숙에서 자야 된다고 하면 자야 되겠죠. 물론 만민이 똑같이 먹고 자는 것이 똑같아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우리 모두 추구하는 목표임에 틀림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議長님을 물론 여인숙비를 드린다고 해서 여인숙에서 주무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委員님들도 내 돈을 보태서라도 전부 여관이나 최소한 안락한 숙박시설을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출한 우리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議長님이나 副議長님이 조금 우리가 다소 지금 예

우를 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議員들의 그런 위상을 정립하는 길이고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돈독히 하는 그런 방향도 없지 않겠느냐 해서 다소 의견이 다르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토론시간에 부분적으로 정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답변이 되었습니까? 安哲柱委員.

○安哲柱委員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다른 부분을...

○委員長 羅在岩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安哲柱委員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들에 대한 것은 議長, 副議長 숙박비하고 식비에 관한 사항들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서 나와있는 숙박료와 식비에 대한 의원들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주요골자였는데 1만 8,000원을 가지고 현실화가 되지도 않는 금액을 가지고 현실화 된다고 했을 때 만약 저희들이 이 안을 통과했을 때 결과적으로 1만 8,000원이라는 것은 현실화된 금액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들인데 제가 아침에 숙박업협회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여인숙급이 1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소위 객실 20개 이상 정도가 숙박의 갑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지방의 싼곳이 2만 3,000원이고 비싼곳이 2만 8,000원, 2만 5,000원 받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출장갔을 때 2만원 이상 해서 숙박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금액을 굳이 우리가 현실화라고 이것을 통과했을 때 이미 현실화에 대한 금액을 인정하는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들인데 이러한 조항들을 개정하고 할 때는 숙박업협회라든지 지방의원들이라든가 여기에서 의견을 다 개진한 다음에 해야지 상위법이 고쳐졌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고 가결시켜주는 일이라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만 6,2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통과시킨다면

이미 우리 委員들이 1만 8,000원에 대한 현실화 가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답변 받기 전에 참고로 본 委員長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비지급 구분표입니다. 현행 법령집 대한민국,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가 차관, 처의 차장, 고등 검사장, 1호봉인 검사, 치안총감, 치안정감, 중장, 소장, 준장 이렇게가 1호인데 여기에 우리가 해당됩니다. 議長, 副議長님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만 8,000원 숙박비는 제3호인데 3호가 4급 및 5급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그 다음에 총경, 경정, 소방정, 소방령, 대학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이것이 3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내려진 현행 지방법령집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安哲柱委員 조금 전에 여비지급 구분표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을 議長, 副議長에 관한 사항이 제1호 사항이 아닙니다. 제2호 사항입니다. 2급 및 3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들이고 그것은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羅在岩 아니 1등급, 2등급이 같습니다. 종전과 같습니다.

○丁昌熙議員 安哲柱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議長, 副議長이 현실화에 다소 못미치는 부분인데 議員은 더더군다나 숙박비일 경우에는 50%에 불과한 1일 숙박비가 1만 8,000원으로 절대적으로 금액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종전의 1만 6,800원에서 우리가 1,800원밖에 상향조정이 안된 것 또한 굉장히 저 본인 역시도 매우 못마땅한 사항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입장에 비추어 지금 현실화 단계로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 첫술에 배부르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2, 3년 후에 재정이 좀더 확충이 되고 보장이 되면 좀더 우리 議員에 대한 예우관계도 개선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安哲柱委員님이나 同僚委員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금액 이상으로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설사 이 금액이 종전 금액 역시도 이것이 그 당시에 현실화된 금액이고 합당한 금액이라서가 아니라 최소한 이 금액이라도 해놓지 않으면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출장에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부분이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이 개정안 역시도 먼저번보다는 조금 그래도 상향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또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라면 종전에 있었던 조례에 따른 지원 출장비밖에는 수령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래도 개선된 것으로 수정해서 적용받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며 이 조례에는 아까 安哲柱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의 일비수당에 관한 사항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토론시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부분적으로 수정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개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이 못된 부분이 많아서 그동안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羅在岩 우리 같은 동료위원의 발의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委員長!」 하는 위원 있음)

예, 玄壽漢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논란, 토론까지 다 나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자가 답변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호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호텔 1급서부터 5급까지 있겠습니까라는 호텔 중간 요금이 하루 1夜當 얼마며 그 다음에 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숙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하나하나 1夜當이 얼마씩인지 얘기해 주시고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여가 1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6,000원 음식값이 대충 무엇을 먹어서 몇 가지 중에서 6,000원 짜리가 뭔가를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丁昌熙議員 제가 평소에 여행을 이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라는 이것은 도시에 호텔이 있는 도시라고 치면 그래도 중급도시의 수준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골에 있는 그런 호텔에 있는 숙실값이 하루를 임대하는 데는 객실 크기 또는 양식, 한식 거기에 따라서 다소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한 한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1일 임차금액에 해당되는 숙실료입니다. 또 지금 현재 식사를 하루에 6,000원이라고 한다고 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탕종류는 해결이 되는 사항이고 그 이상은 2, 3인이 같이 어우러져야 매운탕을 같이 드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

○玄壽漢委員 제가 부족한 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장급은 하루 얼마이고 여관은 얼마이고 여인숙은 얼마이고 그것만 넘기려고 그러합니다.

○丁昌熙議員 장급은 3만원 정도 수준이 평균 받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1일 2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 여인숙이 한 만 이삼천원에서 1만 5,000원 그 사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1일 당 여관은 2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는...

○玄壽漢委員 그것이 현실가입니까?

○丁昌熙議員 예.

○玄壽漢委員 이상입니다.

○丁昌熙議員 2인1실 기준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丁昌熙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겠습니까? 토론하시기 전에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진지하실 것 같으면...

(「할 얘기 다 했으니까 토론까지 다 마치고,」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羅在岩 다 마친 감이 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위원 있음)

예, 玄壽漢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이 개정내용이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묶여졌고 아까 질의시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똑 같습니다. 우리 기초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먹는 것도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동방예의지국에서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것은 가정에서 아버지를 존중하듯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어른들은 예우를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루 의정활동비회의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것을 다시 건의안을 우리가 내부부나 위의 상부에 올리는 조건으로 해서 이 원안대로 그냥 가결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제안을 합니다. 이 상입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羅在岩 다른 委員님들?

(○金以煥委員 議席에서 - 저는 반대합니다.)

○委員長 羅在岩 金以煥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以煥委員 金以煥委員입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는 할 때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단한 것 같으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玄壽漢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소위 말하자면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안건을 만들어서 다시 상부에 이렇게 건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데 저는 그것이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절대 통과시킨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통과시킨다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 절대 통과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원안 자체를 통과를 안합니까? 수정도 없으시고.

○金以煥委員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 議員들

것은 올릴 수 없다고 하니까 절대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의장만 이렇게 安哲柱委員님이 말씀하셨듯이 議長만 깎아서 내린다고 하면 그것도 뭐하고 현실화에 맞지않기 때문에 조정이 안된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委員長 羅在岩 조정은 가능합니다. 상향조정이 안되고 하향조정에서 같은 비율로 인하는 될 수 있다.

○金以煥委員 그것이 안된다 이겁니다. 상향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된다는 거죠.

○委員長 羅在岩 부결을 하는 안을 주셨습니다. 지금 玄壽漢委員과 金以煥委員 두분의 원안과 부결안에...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朴鍾植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朴鍾植委員 아까 질의 때 말이죠. 金以煥委員님 말씀이고 제안자이신 丁昌熙議員 설명도 아주 긍정이 가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은 효력발생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다시 제안하는 이러한 결단을 하더라도 아까 玄壽漢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玄壽漢委員님 제안에 다시 재청을 합니다.

○委員長 羅在岩 그러면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朴文培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朴文培委員 재청까지 나온 사항이고 金以煥委員이 반대하되 소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가결을 원안대로 하되 부당한 상위법에 대한 건의문과 함께 건의를 모토로 한 가결 이것으로 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찬반에 대한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정을 委員長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토론하실 委員님 토론 들어가

기 전에 적어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議員들 중에 가장 회의를 잘 하시는 원숙한 분들인데 질의시간에 토론 다 나와버리고 해서 진행하기가 그런데 구분을 해서 좀 심도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金以煥委員 議席에서 - 여기에 절대 반대 하고 본 위원은 퇴장을 하립니다. 우리 議員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니까 이러한 발상이 있다는 것이 답답해요. 잠자는 것이 똑같은데.)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羅在岩 예, 李炳文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李炳文委員 李炳文委員입니다. 우리 議員들의 회의수당 지급에 대하여 상위법 범주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 부칙에 개정조례 적용시기를 검토한 결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삼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삼청까지 나와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통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金以煥委員님께서 내놓으신 원안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러한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時 22分 舉手表決)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이 안으로 내주신 원안대로 가결을 원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李炳文委員님께서 수정,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다가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분의 찬성으로 해서 李炳文委員이 제안을 해주신 공포한 날로부터 한대로 수정안이 통과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4分 散會)

○出席委員 9人

羅在岩 安哲柱 李炳文 玄壽漢 李炯述
丁昌熙 朴鍾植 朴文培 金以煥

○出席議員

丁昌熙

○出席專門委員

尹柱彩 蔣昭秀